

춘천지방법원 2021. 7. 7 선고 2021가단66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7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전 1,416㎡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6. 6. 8. 접수 제246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윤이나

별지